

# EU PPWR\* 시행 이후 동향과 업종별 대응 전략

\*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 (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)

- 2026년 6월 보고서 『EU PPWR 시행에 따른 공급망 패러다임 전환과 전략적 대응 방안』 후속편

-

정재호 수석연구원, 소재인프라연구센터 (gun@posri.re.kr)

## 목차

1. 6월 보고서 이후 달라진 점과 정정 사항
2. 시행 이후 최신 동향 - '지연'에서 '집행'으로
3. FAQ 2판 기준 실무 쟁점 업데이트
4. 공급망 위치별 시사점: 제조업 전반, 포장재 · 원료
5. 경영진 시사점과 지원제도

## Executive Summary

- 본 보고서는 2026년 6월 보고서의 후속편으로, FAQ 2판('26.8월) · 규정 조문과 대조하여 집행 효력 · 일부 하위법령 일정 등을 보완 · 정정
  - '재사용 포장 QR'의 근거는 제12조(2)이고 라벨과 QR 일정은 시행법 발효 시점과 연동되어 뒤로 미뤄질 수 있음
- PPWR은 '26.8.12일 예정대로 일반 적용되어 쟁점은 '연기 여부'에서 '집행 방식과 후속 입법'으로 이동
  - 연기 요청 · 반대 서한 공방에도 시행일을 바꾸지 않았으며, EU 일반법원의 무효소송 12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음
  - 집행은 '경고 · 시정 기회 우선' 원칙이고 회원국 제재 규정은 대부분 '27.2월까지 마련되나, 당국 요청 시 10일 내 서류 제출 의무와 유통 플랫폼의 EPR(확대 생산자 책임제도) 등록 확인이 먼저 작동
- 후속 하위법령은 지연 · 미확정 상태로, EPR 책임대리인 유예안은 EU 역내 생산자만 대상이어서 한국 등 제3국 기업에는 변화가 없음
  - 조화(harmonized<sup>1</sup>) 라벨 · 생산자 등록부 시행법은 기한을 넘겼고, 재생원료 산정 · 제3국 원료 인정 조건은 '26년 말 전후 확정 전망
- EU 집행위의 FAQ 2판으로 '제조자 판정' 기준이 구체화되어, 포장 단위별 제조자 판정을 주요 과제로 관리 필요
  - 상표 · 명칭이 있으면 그 명의자, 무(無)브랜드이면 발주 · 설계 사양 결정자가 제조자로, EU 바이어 상표 OEM · PB 수출은 바이어가 제조자
  - 식품표시법상 책임식품사업자와 PPWR 제조자는 다를 수 있고, PFAS<sup>2</sup>는 의도적 첨가 · 비의도적 오염을 가리지 않는 농도 한도로 적용
- 공급망 위치별로 포장을 '쓰는' 제조업, '만드는' 포장재 제조기업, 원료를 '공급하는' 소재기업의 지위와 과제가 구분됨
  - 포장재 제조기업은 고객 상표품(OEM 제품)에서는 자료 제공 의무를 지는 '공급자', 무브랜드 표준품(자사 제품)에서는 '제조자'이며, 원료 공급기업은 PFAS · 우려물질 식별 자료 제공을 거부할 수 없음
  - 식품 · 음료 기업은 Annex V 금지 포장 형태, 회원국 DRS, 퇴비화 · 환경표현 요건을 추가로 점검할 필요

<sup>1</sup> EU 27개 회원국의 서로 다른 표시기준을 하나로 통일한다는 의미

<sup>2</sup> 과불화화합물, Per-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

## 1. 6월 보고서 이후 달라진 점과 정정 사항

본 보고서는 '26.6.10일 발간한 「EU PPWR 시행에 따른 공급망 패러다임 전환과 전략적 대응 방안」의 후속편으로 ①시행 이후 확인된 사실 ②EU 집행위원회 PPWR FAQ 2판('26.8월)으로 구체화된 해석 ③6월 보고서 내용 중 보완 · 정정이 필요한 사항 ④공급망 위치별 시사점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음

### □ 6월 보고서 이후 4개월간 시행 확정, 해석 구체화, 하위법령 지연, 거래 현장의 요구 확산이 동시에 진행

- (시행 확정) '26.8.12일 예정대로 일반 적용되었고 연기 논란은 종결
- (해석 구체화) FAQ 2판이 제조자 판정 · 공급업체 의무 · 재고 처리 · 집행 원칙을 명확화
- (하위법령 지연) 조화(harmonized) 라벨 · 생산자 등록부 시행법이 기한을 넘기며 일부 일정이 미뤄질 가능성
- (현장 요구) 유통 플랫폼과 EU 바이어가 EPR 등록 정보와 PPWR 문서를 거래 조건으로 요구

#### 【 6월 보고서 시점 대비 주요 변화 】

| 구분      | 6월 보고서 시점                   | 10월 현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시행 여부   | 업계 연기 요청 진행 중, '유예기간 없음' 강조 | '26.8.12일 예정대로 시행, 시행일 개정 없음                 |
| 해석 근거   | 가이드라인 · FAQ 1판('26.3.30일)   | FAQ 2판('26.8월) 신규 26건 · 수정 7건, 집행 장(제16장) 신설 |
| 집행 방식   | 판매 금지 · 통관 차단 · 리콜 가능성 강조   | 경고 · 시정 기회 우선, 회원국 제재 규정은 '27.2월까지 마련        |
| EPR 대리인 | 판매국별 대리인 선임 부담              | EU 역내 생산자 대상 유예안 논의, 제3국 생산자는 제외             |

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하위법령 일정 | '28.8월 라벨 · '29.2월 QR 등 고정<br>일정으로 제시 | 시행법 지연으로 '발효 후 24 ·<br>30개월 중 늦은 날' 적용 → 후퇴<br>가능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
\*자료: 포스코경영연구원('26.6.10일) 이슈리포트, EU 집행위원회 PPWR FAQ 2판('26.8월) 비교

## □ 6월 보고서를 FAQ 2판 · 규정 조문과 대조한 결과 기본 구조는 유효하나 일부 표현은 보완 · 정정이 필요

- 집행 효력, 하위법령 연동 일정, 재생원료 인정 범위, 제조자 판정  
기준 등 9건은 보완, 조항 수 · 근거 조항 등 3건은 정정하며, 본  
보고서 본문은 수정된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

### 【 6월 보고서 시점 대비 주요 변화 】

| 6월 보고서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월 확인 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판정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문서 미제출 시 형사처벌<br>가능, 사실상 통관 필수<br>서류와 동일한 효력     | 제재는 회원국이 제68조에 따라 정하며(대다수<br>'27.2월까지), FAQ는 경고 · 시정 기회 우선을 명시.<br>모든 선적을 세관이 사전 승인하는 제도는 아님           | 정정 |
| '29.2월 재사용 포장 QR<br>의무화                          | 근거는 제12조(2)이며 '29.2.12일 또는 라벨 시행법<br>발효 30개월 후 중 늦은 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정정 |
| '28.8.12일 라벨링 · QR<br>의무화                        | '28.8.12일 또는 시행법 발효 24개월 후 중 늦은 날,<br>시행법이 기한('26.8.12일)을 넘겨 후퇴 가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보완 |
| '30.1.1일 D/E등급 퇴출 ·<br>빈공간 50% · 운송포장<br>재사용 40% | 재활용성은 '30.1.1일 또는 DfR 위임법 발효 2년 후,<br>빈공간은 산정 시행법 발효 3년 후, 재사용 목표는<br>산정 시행법 발효 18개월 후 중 늦은 날(FAQ X.2) | 보완 |
| 인증되지 않은 국내 재활용<br>원료는 대부분 제외 전망                  | 제3국 재생원료도 동등성 충족 시 인정 가능,<br>조건은 '26년 말 전후 시행법으로 확정. 유럽 업계의<br>검증 강화 요구 존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보완 |
| 에코모듈레이션 C등급<br>15~25% 할증, 다층 · PVC<br>1.55배      | PPWR은 등급 기반 조정 기준만 통일하고 요율은<br>회원국 · 생산자책임기구가 결정. (FAQ IV.4 · XVIII.2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보완 |
| B2B 수출 시 한국 기업은<br>Manufacturer                  | 제조자는 상표 · 명칭 명의자 기준으로, EU 바이어<br>상표 OEM · PB 수출이면 바이어가 제조자(FAQ II.6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보완 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'26.8.12일 이전 생산<br>포장재도 출시 시 신규 기준<br>준수 | 물질 등 실체 요건은 적용되나 미출시 재고는 폐기 ·<br>재표시 불요, 식별 · 제조자 정보는 동봉서류로 제공<br>가능(FAQ X.5)        | 보완 |
| 재생원료 10~35%('30년) ·<br>25~65%('40년)      | '40년 세부 수치(접촉민감 PET 50%, 기타 접촉민감<br>25%, 음료병 · 기타 65%) 확인. 적용은 산정 시행법<br>발효 3년 후와 연동 | 보완 |

\*자료: 포스코경영연구원('26.6.10일) 이슈리포트, EU 집행위원회 PPWR FAQ 2판('26.8월) 및 규정 조문  
해설 자료와 대조

## 2. 시행 이후 최신 동향 – '지연'에서 '집행'으로

□ 연기 논란은 종결되어 '26.8.12일 예정대로 시행되었고, 10월 중순  
현재까지 시행일을 바꾸는 개정 법령은 없음

○ '26.4.29일 코카콜라 · 하이네켄 · 맥도날드 · 몬델리즈 등 100여 개  
기업이 연기를 요청했으나, '26.5.13일 150여 개 소비자 · 환경단체 ·  
기업 연합이 반대 서한을 발송

- 이후 약 200개 기업은 '연기 대신 하위법령으로 명확화'를 요청하였으며,  
결국 시행일은 유지됨<sup>3</sup>
- '26.9.1일 EUR-Lex 기록상 시행일을 바꾸는 개정 법령은 없으며, EU  
일반법원의 무효소송 12건도 집행정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<sup>4</sup>

□ EU 집행위원회는 시행 직전 FAQ 2판을 발표해 해석을  
구체화하였으나 법적 의무 자체는 변하지 않음

○ '26.8월 초 발표된 FAQ 2판은 1판('26.3.30일)을 대체하며, 신규 26건  
· 수정 7건(합계 33건)과 집행 장(제16장)이 신설됨<sup>5</sup>

<sup>3</sup> Packaging Europe-Zero Waste Europe('26.4~6월) 보도

<sup>4</sup> ppwr-packaging.com('26.9.1일), ppwratlas.com('26.8.25일)

<sup>5</sup> FAQ 2판 원문의 'NEW!' · 'UPDATED!' 표기 기준 집계

- (제조사) 상표 · 명칭 명의자, 무브랜드는 발주 · 설계 사양 결정자가 제조자임을 명확화(FAQ II.5~7, X.14)
  - (공급업체) 적합성 입증에 필요한 정보 · 문서 제공을 거부할 수 없음(제16조, FAQ X.4)
  - (수입자) 제조자의 적합성평가 · DoC · 식별표시 이행과 동봉서류를 확인(FAQ X.11)
  - (재고 · 경유) 시행 전 생산 · 미출시 재고는 폐기 · 재표시 불요(X.5), 단순 경유 물품은 준수 대상 아님(X.12)
- ※ 기존 서류를 전부 폐기할 필요는 없으며, 포장 단위별 역할 판정을 전수 재검토해 결론이 달라진 문서만 수정

## □ 시행 7주 시점의 집행은 '경고 우선' 원칙이나, 과태료 공백 속에서 유통 채널이 먼저 준수를 요구하는 양상

- (경고 우선) 위반 적발 시 먼저 경고와 시정 기회를 부여하고, 미시정 시에만 판매 제한 · 회수 · 철수가 가능<sup>6</sup>
  - 집행위는 당국이 제재보다 준수 지원 중심으로 접근하고 집행이 무역 · 공급망 · 소비자 접근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
- (처벌의 공백) 집행 권한은 '26.8.12일부터 유효하나 회원국 과태료 규정은 대부분 '27.2.12일까지 미확정'<sup>7</sup>
  - 시장감시규정(Reg. (EU) 2019/1020)에 따른 점검 · 세관 신호는 즉시 작동하므로 '벌금'보다 '서류 즉시 제시 능력'이 실질 리스크
- (유통 채널) 온라인 플랫폼은 입점 전 셀러의 EPR 등록 정보와 자기인증을 확인해야 하며<sup>8</sup>, 등록번호 미비 시 리스팅 차단 사례가 보도됨
  - 아마존 독일 · Cdiscount · Bol.com 등 사례는 단일 출처 보도로 플랫폼별

<sup>6</sup> EU 집행위원회 PPWR FAQ 2판 XVI(제62조)

<sup>7</sup> Tracextech('26.8월), Packaging Insights('26.8.4일)

<sup>8</sup> PPWR 제45조(6) · (8), FAQ XVIII.5

정책 확인 필요<sup>9</sup>

□ 후속 하위법령은 **지연 · 미확정 상태로**, 확정된 의무부터 이행하고 나머지는 모니터링 체계로 관리할 필요

【 후속 입법 · 정책 현황('26.9.28일 기준) 】

| 사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실무 영향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EPR 책임대리인 유예안<br>(COM(2025)982) | EU 역내 생산자 대상 제45조(3)<br>'35.1.1일까지 유예 제안. 이사회는<br>'26.6.24일 협상 위임에서 제외. '26.9.16일<br>유럽의회 본회의 토론(표결 아님), 위원회<br>표결 예정(10월 중 예정이었으나 미정) | 제3국(한국)<br>생산자는 유예 대상<br>아님 |
| 생산자 등록부 시행법<br>(제44조(14))       | 원래 기한('26.2.12일) 경과, 초안 의견수렴<br>'26.9.10일 종료, 채택 일정 미정. 채택 후<br>18개월 내 등록부 구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등록 양식 · 자료<br>항목 변경 가능      |
| 조화(harmonized) 라벨<br>시행법 (제12조) | '26.8.12일 기한 미준수, '26.4분기~'27년 초<br>채택 전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'28년 라벨 시점<br>후퇴 가능         |
| 재생원료 산정 · 수입<br>조건              | 산정 · 검증 시행법 '26년 말 채택 목표,<br>제3국 재생원료 인정 조건 증거수집<br>( '26.8.14~9.16일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PCR 인정 방식<br>모니터링           |
| DfR 위임법 (제6조(4))                | '28.1.1일 채택 의무이나 옴니버스가 기한<br>연기 제안(미확정), CEN/TC 261 표준화 착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등급 세부 기준<br>미확정             |
| ECHA 우려물질(SoC)<br>목록화           | '26년 말 보고서 예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최소화 대응 기준<br>가능             |
| 회원국 제재 규정                       | 대다수 '27.2.12일까지 마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시정 · 회수 권한은<br>즉시 행사 가능     |

\*자료: EUROPEN('26.8.12일), Fernable('26.8.14일), ERP · EXPRA · FoodTimes · prodlaw.eu('26.6~9월),  
임팩트온('26.9.17일) 등 재구성

<sup>9</sup> ecocomply.ai(2026) — 독일 · 프랑스는 미등록 생산자에 대한 기존 국내 제재가 병존한다고 보도

○ EPR 책임대리인 유예안은 EU 역내 생산자만 대상이므로 한국 등 제3국 기업의 국가별 대리인 요건은 그대로 유지

- '26.9.16일 유럽의회 토론에서 환경담당 집행위원은 신속 처리를 요청하며 일부 기업이 대리인 부담으로 EU 판매를 중단했다고 언급<sup>10</sup>

※ PPWR의 '대리인'은 두 종류로, ① EPR 책임대리인(제45조)은 판매국별 등록 · 보고 · 분담금을 대행하고 ② PPWR 공인대리인(제17조)은 제조자의 서면 위임을 받아 DoC 작성, TD 보관 · 당국 제시 등을 수행함. 자료에서 모두 'AR'로 약칭되어 혼동되기 쉬움

□ EU 현지에서는 바이어와 유통업체가 문서 제공 역량을 거래 조건으로 삼기 시작

○ 독일 유통업체는 PB(자체브랜드) 상품의 생산자 책임을 선제 수용하는 추세로 PB 납품 기업의 부담 확대 가능성이 제기됨<sup>11</sup>

- '25.9월 뉘른베르크 포장박람회'에서 'PPWR Ready' 표기가 확산되며 재활용 등급 높은 소재 전환과 적합성 입증 가능 여부가 소싱의 기본 기준으로 자리잡음

○ EU 내 지점(Branch)은 법적 인격이 없어 수입자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현지법인 설립 또는 PPWR 공인대리인 지정이 필요<sup>12</sup>

- 자사물 · D2C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면 판매국의 '생산자'가 될 수 있음

○ 판매국이 늘수록 국가별 등록 · EPR 고정비가 커지는 구조로, 독일 이커머스 기업 뵈처(Böttcher AG)는 유럽 확장을 철회하며 환경 행정 부담을 사유 중 하나로 제시<sup>13</sup>

□ 식품 수출기업은 PPWR과 별도로 식품접촉 소재 규제와 일회용

<sup>10</sup> 임팩트온('26.9.17일) "EU, PPWR 책임대리인 의무 완화 추진...한국 등 역외기업은 그대로"

<sup>11</sup> KATI 농식품수출정보(2026), 식품음료신문('26.4.16일)

<sup>12</sup> 법무법인 화우('26.4월) 뉴스레터

<sup>13</sup> 임팩트온('26.9.21일), 단일 출처이며 고세율 · 에너지 · 인건비 등 복합 사유

## 플라스틱(SUP) 지침을 함께 관리해야 함

### ○ 식품접촉 소재 규제가 연이어 강화되어 공급업체의 식품접촉 선언서와 PPWR 서류를 구분 관리해야 함

- 비스페놀 A 등 금지(Reg. (EU) 2024/3190)에 따른 일회용 식품접촉 제품 잔여 유통은 '26.7.20일로 종료
- 플라스틱 식품접촉재 개정(Reg. (EU) 2025/351)으로 '26.9.16일부터 신규 출시분은 개정 기준 적용
- 여러 법령의 선언을 하나의 EU 적합성 선언서로 묶어 작성할 수는 있으나 포장과 제품은 구분해야 함<sup>14</sup>

### ○ SUP 지침(Directive (EU) 2019/904)상 플라스틱 라이닝 · 코팅 종이컵 · 식품용기도 '일부 플라스틱 제품'으로 규제 대상<sup>15</sup>

- 바이오 · 생분해 플라스틱도 플라스틱으로 보며, 커피러리 · 접시 · 빨대 · 발포폴리스티렌(EPS) 용기 등은 시장 출시 금지
- PPWR이 SUP 지침 일부를 개정하였으므로 최신 적용은 PPWR 제25조 · Annex V와 함께 확인

### ○ 환경표현은 법정 최소 요건을 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, 법정 요건이 없는 주장은 소비자 권한강화 지침(Directive (EU) 2024/825)이 적용<sup>16</sup>

## □ '30년 전후 일부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 형태의 시장 출시가 제한되며, 세부 범위는 '27.2.12일까지 집행위 지침으로 확정

### ○ 금지 대상은 포장이지 제품이 아니며, 집행위는 '32년까지 금지 조항을 재검토<sup>17</sup>

【 시장 출시가 제한되는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(Annex V) 】

<sup>14</sup> FAQ XV.4

<sup>15</sup> EU 집행위원회('21.5.31일) SUP 지침 가이드라인 Q&A

<sup>16</sup> FAQ IX.1. 지침 2024/825는 '26.9.27일 적용 개시로 보도

<sup>17</sup> FAQ XII.1 · 6. 적용 시기('30.1.1일)는 보도 기준이며 FAQ는 지침 발표 약 3년 뒤로 표현

| 항목                    | FAQ 설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수출기업 유의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① 판매시점 그룹포장           | 소비자 다량 구매를 유도하는 편의형 포장(콜레이션 필름 · 수축포장 등), 두 조건 모두 충족 시 금지, B2B는 대상 아님 | 묶음 판매용 필름 포장 점검 |
| ② 신선 과일 · 채소 포장       | 가공되지 않은 신선 과일 · 채소 1.5kg 미만 사전 포장 제한, '입증된 필요'와 제외 목록은 지침에서 확정        | 품목별 예외 목록 확인    |
| ③ HORECA 매장 내 식음료     | 즉시 섭취용 제공 시설이 대상(음용수 없는 시설 예외), 배달 · 테이크아웃은 금지 대상 아님(재사용 의무 별도)       | 외식 채널 납품 포장     |
| ④ HORECA 소스 · 조미료 소포장 | 테이크아웃 즉시 섭취 조리식품과 의료 부문만 예외, 예외 확대 근거 없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소스 · 조미료 납품업체   |
| ⑤ 숙박 개별 예약용 위생 · 화장품  | 개별 예약용만 대상, 요청 시 제공 미니어처는 예외로 명시되지 않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호텔 납품 용품        |
| ⑥ 초경량 비닐봉투            | 퇴비화 · 생분해 포함 금지, 위생 · 식품 낭비 방지 용도는 제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회원국별 감축 조치 확인   |

\*자료: EU 집행위원회 PPWR FAQ 2판 XII장 재구성

## □ 음료 수출기업은 회원국별 보증금 · 회수 제도(Deposit and Return System, 이하 DRS) 요건을 판매국별로 확인해야 함

- 일회용 플라스틱 음료병과 금속 음료용기는 '29.1.1일까지 90% 분리수거 목표가 각각 적용<sup>18</sup>
  - '26년까지 80% 넘게 수거한 회원국은 DRS 설치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, 우유 · 와인 · 증류주는 DRS 참여 의무가 없으나 수거 목표 계산에는 포함
- DRS 표시는 조화(harmonized)되지 않아 유통 회원국의 라벨을 따라야 하며,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의 DRS 라벨 부착을 금지할 수 없음<sup>19</sup>

<sup>18</sup> FAQ XX.1 · 5

<sup>19</sup> FAQ VIII.3 · XX.4

### 3. FAQ 2판 기준 실무 쟁점 업데이트

□ 포장 해당 여부와 생산자 판정을 사례 중심으로 구체화하여, 수출 형태별 구분을 포장 단위 · 판매 구조별로 세분화할 필요

○ 포장 해당 여부는 제품 종류가 아니라 '포장 기능'으로 판단하며, 판매 · 그룹 · 운송 · 이커머스 포장의 유형별로 적용 요건이 다름

- 서신 · 청구서를 담은 봉투는 포장이 아니나, 빈 봉투나 카탈로그 · 잡지 등 제품이 든 봉투는 포장에 해당
- 운송 기능을 겸하는 판매포장도 판매포장이며, 반입 물량을 개봉 · 재포장 · 소분하는 물류업체는 최종 사용자가 아님
- 종이 · 목재, 방산 물품 포장도 재질 · 용도만으로 제외되지 않으며, 위험물 · 팔레트 랩 등의 예외는 '포장 전체'가 아니라 '조항별'로 적용<sup>20</sup>

○ EPR 생산자는 판매국에 포장을 처음 공급하는 자로 정해지며, 같은 포장이라도 판매 구조에 따라 국가별로 생산자가 달라질 수 있음

- 무브랜드 골판지 박스를 같은 회원국 고객에게 팔면 박스 제조사, 다른 회원국 고객이 채워 운송하면 그 고객, 제조사가 직접 채워 다른 회원국 최종 사용자에게 팔면 제조사가 해당국 생산자
- 생산자 등록부 시행법 채택 후 18개월 내 등록부가 구축되어 통합 양식 첫 보고는 '30.6.1일 예정이나, 그 사이에도 국가별 현행 의무는 유지
- 플랫폼은 서면 위임 시 분담금을 대납할 수 있으나 등록 · 보고 책임은 생산자 · 대리인에게 있고, 일회용 DRS는 요건 충족 시 참여 생산자를 대신해 등록 · 보고 가능

□ 실무의 출발점은 포장 단위별 '제조자' 판정이며, 판정 없이 문서 작업을 시작하면 작업이 반복됨

○ 상표 · 명칭이 있으면 그 명의자가 제조자이며, 누가 실제로 생산 ·

<sup>20</sup> KOTRA 브뤼셀무역관('26.8.20일) PPWR 대응 웨비나 자료

## 충전했는지와 무관

- 무브랜드이면 포장을 발주하고 설계 사양을 정한 자가 제조자이며, 범용 무브랜드품은 최종 형태로 만든 제조사가 제조자
- 상표 명의자가 초소기업이고 공급자가 같은 회원국이면 공급자가 제조자가 되며, 라이선스 관계는 계약별로 판단

## ○ 적합성평가 절차는 위탁할 수 있으나 TD 작성은 위임할 수 없고, 보관 · 당국 제시는 PPWR 공인대리인에게 맡길 수 있으며 법적 책임은 제조자에게 남음

※ 권장 순서: ① 제조자 판정 → ② 포장 인벤토리(BOM<sup>21</sup>) → ③ 유해물질 시험 → ④ TD 작성 → ⑤ DoC 발행 · 보관

### 【 제조자 판정 예시(고추장 PET병 팔레트) 】

| 포장 단위            | 유형   | 제조자 판정     | 근거(FAQ 2판)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브랜드 인쇄 PET병      | 판매포장 | 해당 식품기업    | 상표 명의자(II.6)                      |
| 매장 진열용 6병입 카톤    | 그룹포장 | 해당 식품기업    | 상표 명의자, 무브랜드면 발주 · 설계 결정자(II.5~6) |
| 카탈로그 규격 무브랜드 골판지 | 운송포장 | 골판지 제조사    | 무브랜드 범용품은 물리적 제조사(II.5)           |
| 주문제작 무브랜드 전용 트레이 | 운송포장 | 발주한 식품기업   | 발주 · 설계 사양 결정자(X.14)              |
| EU 바이어 상표 PB 파우치 | 판매포장 | EU 바이어(원칙) | 상표 명의자(II.6), 예외(II.7)            |

\*자료: EU 집행위원회 PPWR FAQ 2판 II.5~7 · X.14, 식품음료신문('26.9.3일) 사례 재구성 — 개별 사안은 법률 검토 필요

## □ TD와 DoC는 세트로 운영되어야 하며, 식품기업은 식품접촉 선언서 · 식품 표시와의 차이에 유의

<sup>21</sup> BOM(Bill of Materials): 자재명세서

- TD는 일반 설명 · 설계 · 재질 · 적용 표준 · 평가 설명 · 시험성적서로 구성되고, DoC는 포장 단위 전체에 1건씩 판매국 언어로 작성<sup>22</sup>
  - 국가 당국의 합리적 요청이 있으면 10일 이내에 DoC · TD를 당국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출해야 하며, 제조자 · 수입자 · PPWR 공인대리인 모두 해당
  - 보관기간은 일회용 5년 · 재사용 10년이며, 제조자 · 수입자 모두 기술문서 보관 의무
  - 병 · 마개 · 라벨 등 구성품별로 쪼개지 않으며, 팔레트 · 랩 · 스트랩 등 서로 다른 포장 유형은 각각 작성
  - 식별 표시는 유형 · 배치 수준이면 되고 여러 구성품이면 한 곳에만 표시해도 되며, 제조자가 당국에 사전 통지할 필요는 없음
- 식품표시법상 '책임식품사업자'와 PPWR 제조자는 다를 수 있어, 식품 표시 정보만으로는 제조자 표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

□ 유해물질은 '전부 시험'보다 '적합성 입증 논리'가 중요하며, 식품접촉 포장의 PFAS를 우선 점검

- 4대 중금속 합계 100mg/kg 이하 기준은 모든 포장에 적용되는 함량 기준으로, CEN/CR 13695-1 사용이 권고됨
  - 기존 조화(harmonized)표준 EN 13428 Annex C는 새 우려물질 규정의 적합성 추정 근거가 되지 않으나 개정 표준 전까지 사용 가능(FAQ III.9)
  - 재생유리 포장은 4대 중금속을 의도적으로 첨가하지 않은 경우 200ppm 예외 기준이 허용됨<sup>23</sup>
- PFAS는 식품접촉 포장에 농도 한도로 적용되며 의도적 첨가 · 비의도적 오염을 구분하지 않음

<sup>22</sup> PPWR Annex VII · VIII, FAQ XV.5 · XV.14

<sup>23</sup> 관계부처 합동 설명회('26.4.29일) Q&A, 집행위원회 결정 2001/171/EC

- 1단계 총불소(TF) 50mg/kg 미만이면 준수 확인, 초과 시 2단계 유기불소 확인, 3단계 TOP 분석(개별 25ppb · 합계 250ppb · 고분자 포함 50ppm)
- 조화(harmonized) 시험방법과 대상 PFAS 목록이 아직 없어 공급자 자료 · 재질정보 · 위험평가 · 필요 시험을 조합한 입증 논리를 TD에 담아야 함(FAQ III.19)
- 알루미늄 등 기능성 장벽이 있어도 식품접촉 용도이면 적용되므로 피자박스 · 테이크아웃 용기 · 종이빨대 등 방수 · 방유 코팅 종이 포장물 우선 점검

- 공인 시험기관 이용이 법적 의무는 아니나 당국 제출 시 공신력 측면에서 KOLAS<sup>24</sup> 인정기관 성적서가 유리

□ 공급업체 관리는 제16조 자료 제공 의무를 계약서에 명문화해야 실효성을 가짐

- 공급자는 적합성선언 책임은 없으나 제조자의 적합성 입증에 필요한 정보 · 문서 제공을 거부할 수 없으며, 식품접촉 등 접촉민감 포장은 개별조치 문서도 제공 대상

【 공급계약 반영 조항 】

| 계약 조항        | 반영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공 근거 · 범위   | 제16조(1) 인용, 재질 · 층 구조 · 구성품별 중량 · 조성 · 사양 · 시험성적서 · SDS |
| 접촉민감 포장      | 식품접촉 적합성 선언 등 개별조치 문서 포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언어 · 형식 · 기한 | 이해 가능한 언어, 서면/전자, 회신기한을 숫자로 명시(당국 요청 대응 기간 고려)          |
| 변경 통보        | 원료 · 잉크 · 접착제 · 라이너 · 공급처 변경 시 사전 통보                    |
| 비밀유지         | 상업적 민감정보는 제조자의 기밀 유지 의무 명시(FAQ III.5, X.10)             |

<sup>24</sup> KOLAS(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): ISO/IEC 17025 기반 한국 시험기관 인정 제도

\*자료: PPWR 제16조, 식품음료신문('26.9.3일) 재구성

- 기존 공급업체를 PPWR 대응 역량 기준으로 ▶선도(자료 즉시 제공)  
▶전환 중 ▶미대응의 3단계로 분류하여 관리 전략을 차별화<sup>25</sup>

□ 재활용성은 **통합 구성품까지 포함해 평가**되므로 뚜껑 · 라벨 ·  
접착제 등 구성품 정보 확보가 선결 과제

- 소비자가 완전히 분리해야 내용물에 접근하는 뚜껑 · 필름은 분리  
구성품, 병 마개 · 라벨처럼 함께 버려지는 것은 통합 구성품
  - 재활용이 불가능한 통합 구성품은 포장 단위의 등급을 낮추거나 포장  
전체를 부적합하게 만들 수 있음
- 재활용성 등급은 A( $\geq 95\%$ ) · B( $\geq 80\%$ ) · C( $\geq 70\%$ )이며, '30년부터 C등급  
미만, '38년부터 C등급의 시장 출시가 금지<sup>26</sup>
  - 제조자가 등급을 평가해 TD에 포함하며, 제6조(11) 및 혁신 포장 예외 외  
추가 면제는 없음
  - 코르크 · 목재 · 식물 · 도자기 등 판매포장은 재활용성 평가가 면제되나  
EPR 요율 조정용 평가는 필요하며, 유아식 예외는 법정 정의 제품에 한정

□ 재생원료(PCR) 의무는 **산정 시행법과 연동되어 적용 시점이  
조건부**이며, 식품 포장은 원료 확보 경로가 제한적이고 제3국 원료  
인정 조건이 쟁점

- 최소 함량은 '30년 접촉민감 PET 30% · 기타 접촉민감 10% · 일회용  
음료병 30% · 기타 35%에서 '40년 각각 50% · 25% · 65% · 65%로  
상향
- 포장 유형별 · 제조공장 연 평균으로 산정하며, 플라스틱 부분이 포장  
중량의 5% 미만이면 제외

<sup>25</sup> 포스코경영연구원('26.6.10일) 이슈리포트

<sup>26</sup> PPWR Annex II. 적용은 DfR 위임법 발효 24개월 후와 '30년 중 늦은 날과 연동

- 적용은 '30.1.1일 또는 산정 · 검증 시행법 발효 3년 후 중 늦은 날이며, 구성품 공급자가 재생원료 정보를 제공하고 제조자가 TD에서 입증
- 식품접촉 재생플라스틱 규정(Reg. (EU) 2022/1616)의 적합 기술은 소비 후 PET 기계적 재활용 등으로 한정되어, 소비 후 PP의 식품포장 재사용은 목록에 없다고 보도<sup>27</sup>
  - 식품용 PP 필름 중간층에 재생 PP 20%를 적용한 실증 사례가 보도되었으나 파일럿 단계로, PPWR 준수 입증과 EU 식품접촉 인정은 별개 과제
- 시행일 전 예상한 '국내 원료 대부분 제외' 전망과 달리 제3국 재생원료도 EU 동등 기준 충족 시 인정될 수 있으나, 유럽 재활용업계가 '유럽산 우선'과 역외산 검증 강화를 요구하고 있어 수거국 · 시설 이력 확보가 필요<sup>28</sup>
- **퇴비화 · 환경표현 · 최소화 · 표시** 요건은 '28~'30년 적용이나 설계 · 문구 변경에 시간이 걸려 선제 점검 필요
  - (퇴비화) '28.2.12일부터 투과성 티백 · 커피 음료백 등은 산업용 퇴비화 기준 충족 의무가 적용되며, 과일 · 채소 부착 라벨도 대상으로 보도<sup>29</sup>
    - 비투과성 머신용 캡슐은 의무 대상이 아니나 회원국이 요구할 수 있음
  - (환경표현) 재활용성 · 퇴비화 · 재생원료 등 주장은 법정 최소 요건을 넘는 특성에 한정하고 포장 전체인지 일부인지 명시
    - 재생원료 함량 주장은 연평균 목표를 초과할 때만 가능하며, 소비자를 오도하는 표시는 금지
  - (최소화) '30.1.1일부터 이중벽 · 이중바닥 등 내용물 체감 용량을

<sup>27</sup> 임팩트온('26.9.28일), 원출처 Packaging Europe('26.9.25일)

<sup>28</sup> 임팩트온('26.9.3일)

<sup>29</sup> 임팩트온('26.9.21일)

### 키우는 설계는 기능상 필요를 시험과 TD로 입증해야 허용

- 지리적표시 제품, '25.2.11일 이전 보호된 디자인 · 입체상표는 조건 충족 시 예외이나 등록번호만으로는 부족하고 증빙 필요
- (빈공간) 그룹 · 운송 · 이커머스 포장은 빈공간 50% 이하이며 에어쿠션 · 종이 충전재도 빈공간으로 계산<sup>30</sup>
- (표시) 현행은 제15조 식별 · 제조자 정보를 문자 또는 QR로 표시하고, 조화(harmonized) 재질 · 분리배출 라벨(제12조)은 시행법 지연으로 '28.8.12일 이후로 후퇴 가능
- 제15조 추적용 QR과 향후 제12조 조화(harmonized) 데이터캐리어는 별개이며, 폐쇄형 재사용 운송포장은 재사용 라벨 · QR이 필요

### □ 재고 처리는 'EU 시장 출시일' 기준이나, FAQ 2판을 통해 미출시 재고의 표시 부담이 완화됨

- '26.8.12일 이전 생산 · 미출시 재고는 폐기 · 재제조 · 재표시가 불필요하며 식별 · 제조자 정보는 동봉서류로 제공 가능, 다만 그 이후 생산분은 직접 표시가 원칙
- 자료를 제공할 공급자가 없거나 비협조적이면 제조자가 최선의 노력으로 자료를 확보 · 재구성해야 하며, 단순 경유 · 재수출은 준수 대상이 아님

## 4. 공급망 위치별 시사점: 제조업, 포장재 제조 · 원료 공급

동일한 PPWR이라도 포장을 '쓰는' 제조업, 포장을 '만드는' 포장재 제조기업, 원료를 '공급하는' 소재기업은 법적 지위와 대응 우선순위가 다름. 본 장은 업종별 리스크를 먼저 비교한 뒤 공급망 위치별로 지위 · 의무 · 기회를 정리하였음

### □ PPWR의 영향은 업종과 공급망 위치에 따라 PPWR상 지위가

<sup>30</sup> FAQ XI.1~4. 산정 방법론 시행법은 '28.2.12일까지 채택 예정

달라지며, 같은 기업도 제품군별로 제조자 · 공급자 지위가 섞일 수 있음

【 공급망 위치별 PPWR 지위와 관계 】

| 구분                   | PPWR상 지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즉시 대응(~26년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중기 과제('28~'30년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조업 전반<br>(브랜드 · 수출) | 자사 상표 포장의 제조자,<br>판매국별 생산자<br>(수입판매는 EU 수입자가<br>생산자일 수 있음) | 제조자 판정표 · 포장<br>BOM, 중금속 · PFAS<br>점검, TD · DoC,<br>판매국별 EPR 확인 | DfR 설계 전환, 재사용<br>· 빈공간 대응, PCR<br>조달               |
| 포장재<br>제조기업          | 고객 상표품은 공급자,<br>무브랜드 표준품은 제조자,<br>주문제작 무브랜드는<br>발주자가 제조자   | 제품군별 정보 패키지,<br>유해물질 시험, 표준품<br>TD · DoC · 식별표시                 | 모노소재 전환,<br>재활용성 사전 평가,<br>재사용 · PCR 제품군            |
| 원료<br>공급기업           | 제조자 아님, 제16조 정보<br>제공 의무(거부 불가), 롤<br>형태 랩 등은 제조자          | PFAS · 중금속 · SVHC<br>점검, SDS · 성적서<br>패키지, 변경 통보<br>체계          | PFAS-free 소재, 이력<br>추적 PCR 공급망,<br>모노소재 · 퇴비화<br>소재 |

\*자료: EU 집행위원회 PPWR FAQ 2판 II.5 · II.9 · X.3 · X.4 · X.14 재구성

□ 제조업 전반은 **B2B 운송포장까지 유형별 적합성 입증**이 필요하고,  
'30년 재사용 · 빈공간 기준에 대비해야 함

- 팔레트 · 칼라 · 랩 · 스트랩 등 서로 다른 운송포장 유형은 각각  
평가와 DoC가 필요하며 운송포장 면제는 없음
  - 운송포장 제조자는 최종 형태가 된 시점에 판정하며, 배송용 스티커  
부착은 브랜딩이 아님
- 자체 제작 포장으로 상거래 없이 자사 사업장 간 부품을 운송하면  
대상이 아니나, 외부 제작 운송포장을 쓰면 시장 출시로 보아 적용
- 위험물 운송(제한수량 포함)은 재활용성 · 재생원료 · 재사용 조항에서  
예외이나, UN 승인 포장을 비위험물에 쓰면 적용되며 TD · DoC는  
필요

○ 운송포장 재사용 목표는 '30년 40%, '40년 70%이며, 재사용 포장은 최소 회전수 충족을 TD로 입증해야 함

- EUR 팔레트처럼 운영자 없는 개방형 재사용 시스템은 재사용 라벨 · 회전수 보고가 면제되며, 재사용 포장도 EPR 대상

【 업종별 핵심 체크포인트 】

| 업종             | 핵심 체크포인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식품 · 음료        | PFAS 우선 시험, FCM/PPWR 문서 구분, 책임식품사업자≠제조자(X.13), 연포장 필름 · 잉크 · 접착제 정보 확보, DRS · Annex V 확인     |
| 화장품            | 용기 · 캡 · 펌프 · 스포이드 · 외박스 등 부품별 재질 · 공급처 정리, ODM · OEM 변경 시 재확인 체계, 화장품 책임자(RP)는 PPWR 제조자와 별개 |
| 전자 · 기계 · 부품   | 산업용 운송포장(팔레트 · 목상자 · 랩) 유형별 DoC, 이커머스 · 배송 포장 빈공간 점검, 사업장 간 부품 운송 포장의 시장 출시 여부 확인            |
| 화학 · 배터리 등 위험물 | 위험물 운송 예외 범위 확인(제한수량 여부, UN 승인 포장의 비위험물 사용), 예외에도 TD · DoC는 필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\*자료: EU 집행위원회 PPWR FAQ 2판, KOTRA 브뤼셀무역관('26.8.20일), 포스코경영연구원('26.6.10일) 재구성

□ 포장재 제조기업은 고객 상표품에서는 '공급자', 무브랜드 표준품에서는 '제조자'로 지위가 갈림

【 포장재 제조기업의 판매 유형별 지위 】

| 판매 유형                        | PPWR상 지위    | 의무 · 유의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고객 상표가 인쇄된 판매 · 그룹 포장        | 공급자(제조자 아님) | 제16조에 따라 고객의 적합성 입증에 필요한 정보 · 문서 제공, 거부 불가. 고객이 중소기업이고 같은 회원국이면 공급자가 제조자(X.3) |
| 무브랜드 표준 포장(골판지 박스 · 랩 · 백 등) | 제조자         | 포장 유형별 적합성평가 · TD · DoC 직접 작성, 유형 · 배치 식별표시. 같은 회원국 고객 판매 시 생산자 지위도 가능(II.9)  |

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주문제작<br>무브랜드 포장   | 공급자(발주자가<br>제조사)  | 발주하고 설계 사양을 정한 고객이 제조자이며,<br>제조사는 기술문서에 필요한 자료 제공(X.14)                       |
| 한국에서 EU로<br>직접 수출 | 제3국 제조자 또는<br>공급자 | EU 수입자가 적합성평가 · DoC · 식별표시를 확인하며<br>무브랜드 수입 포장제도 수입자 책임(선적서류로 표시<br>가능, X.11) |

\*자료: EU 집행위원회 PPWR FAQ 2판 II.9 · X.3 · X.11 · X.14 재구성

○ 고객이 TD를 작성할 수 있도록 제품군별 '포장재 정보 패키지'를  
표준화해 선제 제공하는 것이 거래 유지의 핵심

- 표준화 정보는 재질 · 층 구조 · 구성품별 중량 · 조성, 4대 중금속(CEN/CR 13695-1) · PFAS(TF 선행) 성적서, 재생원료 함량(FAQ V.1), 분리 가능성 등 재활용성 기술정보, 물질안전보건자료(SDS) 등

○ 통합 구성품 하나가 고객 포장의 재활용성 등급을 결정할 수 있어  
모노소재 · 분리 용이 구조로의 전환이 우선 과제

- 다층 · 혼합 소재라는 이유만으로 금지되지는 않으나 C등급(70%) 이상이어야 하며, 세부 기준은 '28년 DfR 위임법에서 확정
- 에코모듈레이션이 재활용성 등급을 기준으로 조화(harmonized)되어 고객은 같은 가격이면 고등급 납품처를 선택할 가능성이 큼

○ 자료 패키지 선제 제안, 모노소재 · PFAS-free 제품군, 고객 포장 설계  
지원, '30년 이후 재사용 포장 서비스 등으로 '납품업체'에서 '솔루션  
파트너'로 전환 가능

□ 포장재 원료 공급기업은 **제조자는 아니나 PFAS · 우려물질 식별  
자료 제공 의무**를 지며, 소재 포트폴리오 전환 압력이 큼

○ 제조자가 PFAS · 우려물질(Substances of Concern, 이하 SoC)을  
식별하고 DoC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서면 · 전자로 제공해야  
하며 거부할 수 없음

- 롤 형태 랩처럼 포장으로 출시되는 소재는 제조자 지위(FAQ II.5) 적용

- SoC 최소화 의무는 '26.8.12일부터 적용되나 일반 농도 한도는 없고, REACH SVHC · CLP 분류 등 확대된 위험 범위가 적용<sup>31</sup>
  - ECHA 목록화 연구가 '26년 말 예정이며, 재활용에 악영향을 주는 SoC는 위임법으로 제한될 수 있음
- 소재별 데이터 패키지(중금속 · PFAS 성적서, PPWR 반영 SDS, 재생원료 함량 · 출처, 재활용성 기술정보)를 구축하고 PFAS 함유 가능 소재는 즉시 점검
  - 코팅 · 적층필름 · 기능성 마스터배치 등은 TF 선행 분석 후 기준 초과 시 고객에게 선제 통보하고 대체 일정을 제시하며, 책임 배분을 품질협약에 반영

【 소재 유형별 수요 방향 (전망) 】

| 소재 유형                 | 수요 방향 | 근거와 대응 방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PFAS 함유 코팅 · 필름(식품접촉) | 감소    | '26.8.12일부터 농도 한도 적용 → PFAS-free 대체 소재(셀룰로오스 · 수성 코팅 · 증착 등) 개발 |
| 다층 적층 · 혼합 소재         | 감소    | '30년 C등급 미만 출시 금지, 통합 구성품이 등급 저하 → 모노소재 적층 기술 전환                |
| 모노소재(PP · PE · PET)   | 증가    | 재활용성 B등급 이상 가능성 → 차단성 · 내열성 등 기능성 강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PCR 원료                | 증가    | '30년 재생원료 의무 → 이력 추적 가능한 공급망 · 제3자 검증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퇴비화 소재                | 증가    | '28.2.12일 제9조 대상(티백 등) → 퇴비화 인증 · 구조 재설계                        |

\*자료: PPWR 일정 기반 정성적 전망

- 재생원료 공급기업은 산정 · 검증 시행법과 제3국 재생원료 인정 조건이 확정되는 '26.4분기 이후를 대비해 수거국 · 시설 · 원료 이력의 제3자 검증 체계 준비 필요

<sup>31</sup> FAQ III.6 · III.9. SVHC: 고위험성 우려물질, CLP: 물질 분류 · 표시 · 포장 규정(Reg. (EC) 1272/2008)

## 5. 경영진 시사점과 지원제도

□ PPWR은 환경 규제가 아니라 **EU 시장 접근과 거래 자격의 문제로, 전사 과제로 다뤄야 함**

- 구매 · 품질 · 연구개발 · 생산 · 수출 · ESG · 법무가 함께 움직여야 하며, 포장 담당자 1인으로는 법적 책임이 따르는 TD를 완성할 수 없음<sup>32</sup>
  - 마케팅의 포장 디자인 변경, 물류의 운송포장 변경이 구매 · 품질에 공유되지 않는 분절 운영이 최대 취약점<sup>33</sup>
  - 기존 '지침' 시대의 느슨한 집행 경험에 따른 시급성 과소평가도 대응 지연 요인

□ 경영진이 관리해야 할 리스크는 **비용구조 변화 · 거래 리스크 · 시장 퇴출의 세 가지**

- (비용구조) EPR 에코모듈레이션으로 재활용 등급이 분담금에 연결되며, 등급 기반 조정 기준만 조화(harmonized)되고 요율은 회원국 · 생산자책임기구별로 상이
- (거래 리스크) EU 바이어가 납품업체 등록 심사에 PPWR 문서 제공 가능 여부를 포함시키는 추세로, 문서 미비 시 발주 확정 거부 사례 발생
- (시장 퇴출) '30년부터 C등급 미만, '38년부터 C등급 포장의 출시가 금지되며, 서류 미비 시에는 지금도 입고 보류 · 시정 요구 가능

<sup>32</sup> 관계부처 합동 설명회('26.4.29일) — “포장을 안 쓰고 수출하는 기업은 없기 때문에 모든 산업계가 영향받는다”(기후에너지환경부)

<sup>33</sup> 포스코경영연구원('26.6.10일) 이슈리포트

【 포장 총비용(Total Cost of Packaging) 비교 】

| 비용 항목      | 기존 포장재(C등급)                   | PPWR 대응 포장재(A · B등급)    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조달단가       | 상대적으로 낮음                      | 소재 전환 초기 상승 가능(5~15% 제시) |
| EPR 부담금    | 표준 요율 대비 할증                   | 할인 인센티브                  |
| 규제 리스크 비용  | '30~'38년 퇴출 시 긴급 전환 비용 잠재     | 선제 대응으로 전환 비용 최소화        |
| 물류 · 거래 비용 | 과대포장으로 효율 저하, 서류 미대응 시 거래 리스크 | 최소화 설계로 물류비 절감           |

\*자료: 이슈리포트('26.5월)의 전략적 프레임 재구성(추정치)

□ 경영진은 이번 분기 내 5대 과제를 지시할 필요

- ① PPWR 전담 TF 구성(구매 · 품질 · 법무 · 수출 합동)
- ② 전체 포장 포트폴리오의 제조자 판정표 작성 (이 판정이 서류 작업 순서와 공급업체 요구 범위를 결정)
- ③ 주요 공급계약에 제16조 자료제공 · 변경 통보 · 비밀유지 조항 반영
- ④ 정부 지원사업 신청 검토 · 승인(시험 · TD 작성 · 유럽 대리인 비용)
- ⑤ 분기별 하위법령 모니터링 · 보고 체계 구축 (책임대리인 유예안 · 라벨 · 등록부 · 재생원료 산정 규칙 우선)
  - '30년 의무를 역산하면 소재 전환 · 포장 재설계 · PCR 공급망 구축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할 때 지금이 설계 투자 결정 시점

□ 비용 부담은 정부 · 기관 지원제도를 활용해 줄일 수 있으며, 신청 전 최신 공고의 지원 범위를 확인해야 함

【 활용 가능한 지원제도 】

| 기관        | 기존 포장재(C등급)                        | PPWR 대응 포장재(A · B등급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중기부 · KTR | EU PPWR 신속대응<br>지원사업('26년 신규)      |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내 신설, 시험 · TD<br>작성 · 유럽 대리인 비용 일부 지원(시범공고는<br>최대 70%, 정식 비율은 최신 공고 확인). 문의<br>02-2092-3685, ppwr@ktr.or.kr |
| KOTRA     | 무역장벽119 · EU<br>통상현안<br>헬프데스크(브뤼셀) | PPWR · EPR · CBAM 애로 무료 상담,<br>브뤼셀무역관 VOC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KCL       | PPWR One-stop<br>Compliance        | 수출바우처 수행서비스로 시험 · 평가 · TD/DoC<br>검토 통합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KnowTBT   | 해외인증 기술규제<br>정보포털                  | 국가기술표준원 해외인증지원단의 규제정보 ·<br>지원사업 공고 · 상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\*자료: KOTRA 브뤼셀무역관('26.8.20일) 웨비나 자료, 코리아타임뉴스('25.12월)

## 참고자료

1. Regulation (EU) 2025/40 on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,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, 2025. 1. 22
2. EU 집행위원회 공식 가이드라인 C(2026)2151, 2026. 3. 30 / Commission Notice C/2026/3084, 2026. 6. 10 EUR-Lex 원문
3. EU 집행위원회(DG ENV)(2026.8)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 (PPWR) – Frequently Asked Questions, 2nd edition
4. EU 집행위원회(2021.5.31) Questions & Answers – Guidance on the application of Single-Use Plastic rules
5. 기후에너지환경부('26. 4.), 포장재 분야 국외 규제 대응 정부 합동 설명회 발표자료
6. KOTRA 브뤼셀무역관(2026.8.20) EU 집행위원회 제2차 FAQ 기반 PPWR 대응 웨비나(발표자료 · 영상)
7. 포스코경영연구원(2026.6.10) EU PPWR 시행에 따른 공급망 패러다임 전환과 전략적 대응 방안, POSRI 이슈리포트
8. POSRI · KTR · 한국환경공단(2026.5) EU 포장폐기물 규정(PPWR) 대외이슈리포트
9. 식품음료신문(2026.9.3) [EU PPWR 'FAQ 제2판' 긴급 대응] 법은 그대로, 해석은 구체화...K-푸드 포장 문서 재점검해야
10. 식품음료신문(2026.4.16) EU PPWR 카운트다운...독일 현지는 이미 '속도전'
11. 임팩트온(2026.9.28) 식품 포장재에 재생원료 20% 적용...PPWR 대응 경로 확인
12. 임팩트온(2026.9.21) 【규제트래커】스티커 하나에 막힌 유럽 확장...PPWR 규제 현실화
13. 임팩트온(2026.9.17) EU, PPWR 책임대리인 의무 완화 추진...한국 등 역외기업은 그대로
14. 임팩트온(2026.9.3) EU 재활용업계, PPWR에 '유럽산 우대' 요구...역외산 검증

## 강화 촉구

15. Packaging Europe(2026.8.4) Taking a closer look at the EU's latest PPWR guidance / (2026.8.20) EU Commission misses deadline to harmonize PPWR's labelling requirements
16. Packaging Insights(2026.8.4) EU updates PPWR FAQ to clarify penalties, traceability & existing stock
17. Tracextech(2026.8) PPWR Compliance After August 2026: Enforcement Guide
18. EUROOPEN(2026.8.12) 12 August 2026: Ready or not, here comes the PPWR!
19. ppwr-packaging.com(2026.9.1) PPWR delayed? The verified answer / ppwratlas.com(2026.8.25)
20. 법무법인 화우(2026.4.9) EU PPWR 해석 지침 발표 / (2026.8.13) EU PPWR 본격 시행, Lexology
21. ChemLinked · Certivo · HLC(2026.8) EU PPWR FAQ 2판 해설
22. ERP Global(2026.8.7) · EXPRA(2026.6.29) · FoodTimes(2026.8.26) · prodlaw.eu(2026.9) 환경 옴니버스 및 책임대리인 유예안 관련
23. ecocomply.ai(2026) PPWR Compliance 2026 — 마켓플레이스 · 국가별 제재
24. KATI 농식품수출정보(2026) EU PPWR 관련 기사, 벤처스퀘어(2026.8) D2C · 스타트업 대응
25. KTR EU PPWR 대응 원스톱 서비스
26. KOTRA 무역장벽119 EU 통상현안 헬프데스크
27. 국가기술표준원 KnowTBT 해외인증 기술규제 정보포털